



시 보



제1645호 2024. 5. 27.(월)

조 례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2
-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1
-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7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56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공 고

- 무인 교통단속(과속,신호)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60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63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83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18조제1항 중 “일수 중”을 “일수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과원”을 “직위가 없어 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로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 기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로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26조의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생략)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

-----.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 일수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생략)

④ ~ ⑦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로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기간

5. ----- 개편·폐지----- 직위가 없어 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 제외한다-----
다)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및 제6호로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4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 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26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생략)

제26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변경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변경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84 호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

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85 호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실종아동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 목포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86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u> <u>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u> <u>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u> <u>50으로 한다.</u></p>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87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88 호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목포문화재단 설립·운영

제3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4. 18.>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8.>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4. 18.>

제6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재단의 대상사업 관리 등

제13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5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
- 6 재단운영·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산 등의 조성·관리)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란 재단 설립 시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8.]

③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본조신설 2011. 4. 18.]
4. 18.]

제4장 보 칙

제19조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4. 18.]

제20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89 호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5인 이상이 모인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5.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의하여 설치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90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시장”을 “시장”으로, “부대시설”을 “부대시설”로, “체육기자재”를 “체육 기자재 또는 비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시설의 사용”을 “시설의 사용”으로, 제3조 중 “전용자”를 “전용자”로, “전용료”를 “전용료”로, 제4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로, “사용료”를 “사용료”로, 제5호 중 “관람자”를 “관람자”로, “관람료”를 “관람료”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운영자 및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같은 조 제7호 “단체”를 “단체”로 하고, 제8호 “기본료”를 “기본료”로 하고, 제9호 “어린이”를 “어린이”로 하고, 제10호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제11

호 중 "성인"을 "성인"으로, "경노우대"를 "경로우대"로 하고, 제12호 "군인"을 "군인"으로 하고, 제13조 중 "체육경기"를 "체육경기"로, "체육경기 외"를 "체육경기 외"로 하고, 제14호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자"로, "운영 할 때 에"를 "운영할 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주민건강"을 "주민 건강"으로, "이용기회"를 "이용 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전항의 각 호"를 "제3항과 4항"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제3항 중 "이용 하고자"를 "이용하고자"로 한다.

제9조 "신청순서"를 "신청 순서"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해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수익 목적 행사"를 "(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 하거나 허가조건"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조건"을 "허가 조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기능"을 "여건"으로, 제3항 "제12조제1항"을 "제1항"으로 제4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항으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고려"를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로 한다.

-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2월)	비 고
조 기	06:00~08:00	06:00~09:00	일시사용 4시간미만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2:00	18:00~22:00	

제14조제1항 중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를 "전용", "연습", "방송", "중계", "부속시설"로, "별표 6"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

수 할”을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사)종료”를 “(행사) 종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
받음”을 “교부받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연습사용권은”을 “연습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상기준”을 “배상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용 사용자”를 “전용자”로, “관람권수입”을 “관람권 수입”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5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
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전용사용자”를 “전용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곤라
한”을 “곤란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적합한”을 “운영 목적에 적합한”으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29조까
지로 하며,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1조로 하며, 제24조, 제26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명)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명)

2. 체육·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를 “위원회”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검토·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위탁계약)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중전의 제25조)제1항 중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전대 할”을 “전대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이용료 현황, 사용료 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를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로, “아니된다. (다만)”을 “아니된다.(다만)”으로 하고, “한다.”를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수탁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명할수”를 “명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을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
· 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28조는 삭제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그 밖에 국가”를 “국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1호 및 2호”를 “제1항”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운영요원 등)”을 “(운영 요원 등)”으로 한다.

제33조는 종전의 제31조와 같다.

별표 6 사용료 감면 중 9.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목포 소재 사람과 세대원에 대한 10% 감면을 추가하고, 종전의 9.를 10.으로, 10.을 1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p> <p>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p>	<p>제1조(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p> <p>제2조(정의) ----- -----.</p> <p>1. "체육시설" ----- ----- ----- "시장" ----- ----- "부대시설" ----- ----- 체육 기자재 또는 비품 ----- -----.</p> <p>2. "시설의 사용" ----- ----- -----</p> <p>3. "전용자" ----- ----- "전용료" -----</p>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사용자 “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 사용료 “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관람자 “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 관람료 “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 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단체 “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 기본료 “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9. ” 어린이 “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 청소년 “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 성인 “은 19세 이상인 자

4. “사용자” -----
----- “사용료” -----

5. “관람자” -----
-----, “관람료” -----

6. “운영자 및 수탁자” 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 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단체” -----

8. “기본료” -----

9. “어린이” -----

10. “청소년” -----

11. “성인” -----

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노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 군인 “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 체육경기 “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 체육경기 외 “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 공휴일 “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① (생략)
-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

경로우대

12. “군인”

13.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14. “공휴일”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 운영할 때에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주민 건강

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전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생략)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

----- 이용 기회-----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제3항과 4항-----

----- .

제8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③ ----- 이용하고자 -----

-----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

----- 신청 순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 ② (생략)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수익 목적 행사 등) -----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천 등의 방법으
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원상복구해야 -
-.

제11조(사용 제한) -----

-----.

3. -----
(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
등) -----

4. ----- 사
용하거나 허가 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1. -----
----- 허가
조건-----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기

05:00~08:00 / 06:00~09:00

주 간

08:00~19:00 / 09:00~18:00

야 간

19:00~23:00 / 18:00~23:00

②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
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의 야간 사용시
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
설에 한한다.

④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
용료는 ” 전용 “, ” 연습 “, ”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구 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2월)	비 고
조 기	06:00~08:00	06:00~09:00	일시사용 4시간미만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2:00	18:00~22:00	

② ----- 여건-----

-----.

③ 제1항-----

-----.

④ 제1항-----

----- . -----
-----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

제14조(사용료) ① -----
--- “전용” , “연습” , “방

방송 “, ” 부속시설 “, ” 상행
위 “, ” 중계 “로 구분하여 별
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
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
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
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
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
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
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
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
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
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
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송” , “중계” , “부속시설”

- 별표 5 -----

② ----- 징수할 -----

-----.

③ -----

(행사) 종료-----
-----.

제1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
기) ① ----- 전용사용료 -----

-----.

② ----- 교부받
음-----.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생략)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관람료)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다만, 관람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

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습사용료는 -----
-----.

-----.

③ -----
---- 배상 기준-----
--.

제20조(관람료) ①전용자-----

----- 관람권 수입

-----.

1.·2. (현행과 같음)

3. -----
5퍼센트-----

-----.

2. (생략)

3. ~ 5. (생략)

제23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5. (현행 제2호와 같음)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3조(관리 위탁) ① -----

-- 운영 목적에 적합한 -----
----- 운영할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명)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명)

2. 체육·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
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
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의 회의
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견
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
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
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
칙으로 정한다.

제25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위원
회-----
----- 검토·심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1.·2.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위탁계약)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신 설>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
----- 전대할
-----.

④ 제29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이용료 현황, 사용료 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

-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

----- 아니된다.(다만, ----

----- 하며, 설치된

<신 설>

<신 설>

제27조(지도·감독)<신 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수탁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

----- 시설 등-----
-----.

③ ---- 제2항-----

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2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② (생략)

제30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

--- 명할 수 ---.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3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운영 요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탁계약 해지) ① -----

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생략)

<신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③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 (생략)

-. -----

---.

1.·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
-----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

제33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별표 6]

사용료 감면 (제16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전 용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80%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연 습 사 용 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9.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목포 소재 사람과 세대원	10%	
	10.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1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791 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의2 우수선수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①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용) ① (생략)</p> <p>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한다. <후단 신설></p> <p>③ (생략)</p> <p><신설></p>	<p>제4조(임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 <u>다만, 제9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①</u>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92 호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93 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1.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u>설치·운영해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무인 교통단속(과속,신호) 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 교통 단속(과속) 장비를 신규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목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 시에서는 신호 준수 및 차량 속도 저감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무인 교통단속(과속) 장비 설치

4.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5월 21일 ~ 6월 10일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공고

6. 설치예정지 : [붙임 1 : 위치도]

연번	설치장비	지점명	위치	개소	설치목적	비고
1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자유시장 앞 (자유시장→목포역)	산정동 1587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신설
2		자유시장 앞 (목포역→자유시장)	산정동 1587	1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나. 제출기간 : 2024. 5. 21. ~ 2024. 6. 10.(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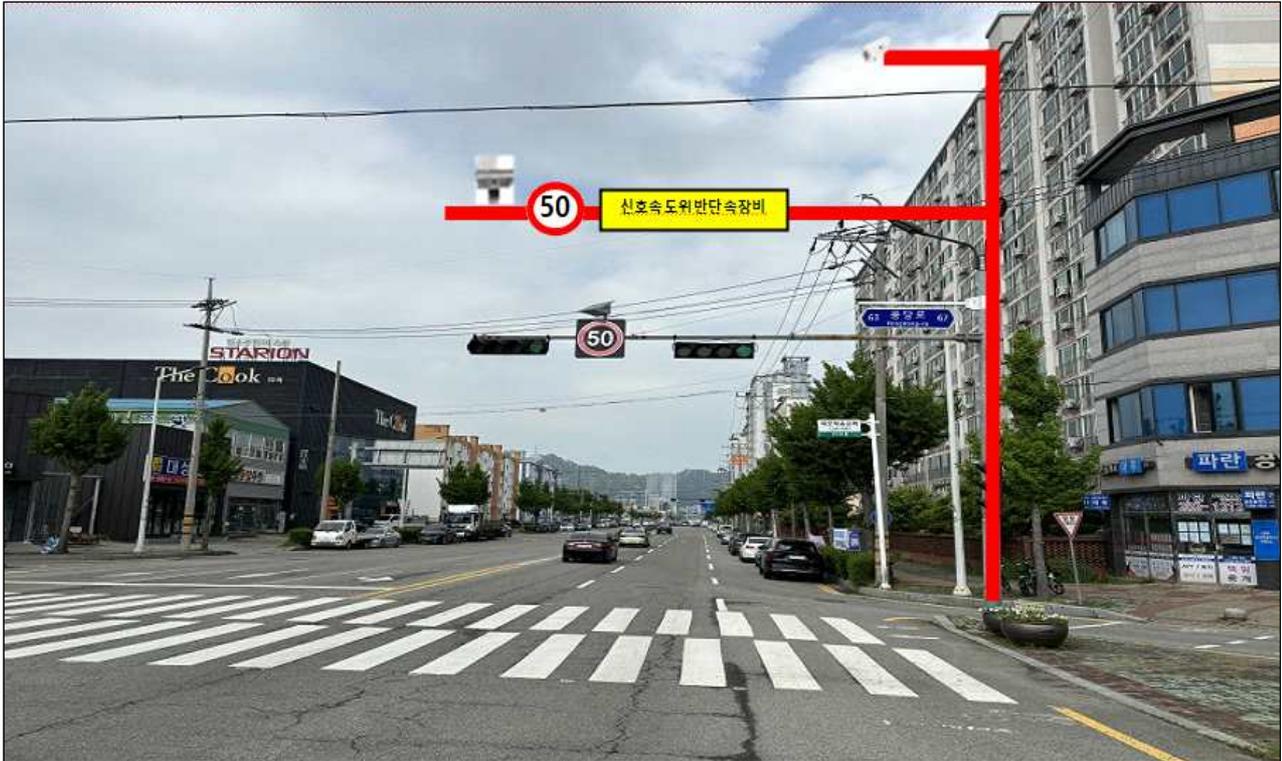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용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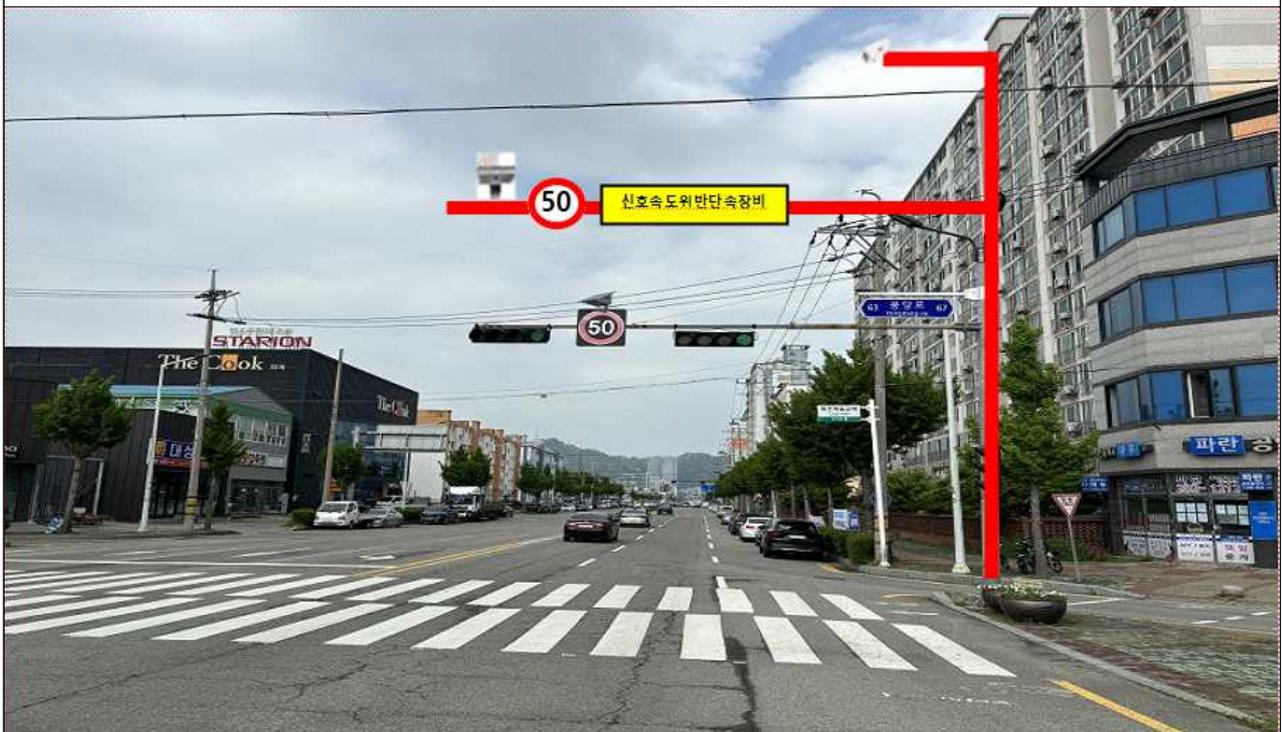
팩스(061-270-3591)

라. 문의처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218)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자유시장→(구)청호시장 방면



(구)청호시장→자유시장 방면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우리시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지역주민 및 각종 구역 소관하는 기관의 의견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 곤란하여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전국단위 구역 관리 제도 필요
- (정 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누는 구역
-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의견수렴 기간

- 2024. 5. 27.(월) ~ 6. 10.(월) - 15일간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각종 구역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 제출방법: 서면(우편), FAX(061-270-3555) 및 공문(공공기관)
-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4.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 현 황

기초구역 번호	소재지	공유수면 매립 준공 및 예정 사업*	기초구역 면적(km ²)			비고
			전	후	증·감	
58762	고하도 일원	3개 사업	3.17	3.76	+0.59	

* 목포신항 배후부지 조성,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조성,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 변경(안) 도면



※ 기존 국가기초구역(58762)의 경계를 매립준공·매립예정 지역을 포함하도록 변경

○ 변경 사유

: 공유수면 매립준공·매립예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 반영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061-270-8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식]

국가기초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국가기초구역 조정 의견	구역번호		조정 의견 유 형	구역통폐합 / 구역경계변경	
				/ 구역 분할	
	의견 내용				
		기 준		변경 의견	
	도 면		도 면		

※ 변경안 도면은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국가기초구역 변경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서

의견 제출 기관 정보	관련기관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국가기초구역 조정 의견	구역번호		조정 의견 유 형	구역통폐합 / 구역경계변경 / 구역 분할
	의견 내용			
	기 준	변경 의견		
	도 면	도 면		

※ 변경안 도면은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